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5
----------	-----

2023. 1. 19.(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23년 1월 4일
-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5일
- 라. 상정일자: 2023년 1월 16일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원회 기능과 목적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로 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3조)

○ ‘심의·조정’ 과 ‘심의’ 를 ‘자문’ 으로 함(안 제2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위촉직 위원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

○ 정기회 개최를 ‘분기별 1회’ 에서 ‘연 2회’ 로 함(안 제9조)

○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함(안 제10조)

○ 제14조제3항을 삭제함(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¹⁾의 자문기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교육감의 교육정책 결정과 추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자문하는 것을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주요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육정책 자문 관련 조문 정비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주요 운영 현황

일 정	주요 내용	소요예산
2020. 5. 15.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21년 - 16,137,400원
2020. 12. 16.	• 1기 위원 20명 위촉	
2021.1.~20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 11회 개최(10회 정기회는 참석위원 정족수 미달로 미개회) • 임시회 2회 • 실무위원회 9회 ※ 실무위원은 전체 위원 20명 중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됨. • 워크숍 3회 운영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2년 - 14,757,800원

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강원, 경기, 서울 등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본 조례 개정과 같은 맥락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관련 조례 없음

법 률 명	제 · 개정일
강원 <u>교육발전자문위원회</u> 조례	2022. 6. 24. 일부개정
경기도 <u>교육정책자문위원회</u>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4. 29. 제정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5. 23. 일부개정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8. 9. 제정
전라남도 <u>교육참여위원회</u>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12. 26. 타법개정
충청남도 <u>미래교육자문위원회</u> 운영 조례	2019. 4. 10. 타법개정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5.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2022. 6. 29. 타법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u>교육정책자문위원회</u> 조례	2017. 4. 28.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u>정책자문위원회</u> 설치·운영 조례	2022. 1. 6.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u>미래교육자문위원회</u>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2. 21. 타법개정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11. 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2011. 6. 30.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충북교육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을 조례

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자문으로 규정하여 주요 자문 사항을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충북교육정책 및 교육활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과 추진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시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학교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9조의 회의 규정에 위원회 정기회를 분기별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한 것은 위원의 참석률 저하 등에 따른 형식적인 정기회 개최나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회를 축소하는 대신 임시회나 의제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4조에 위원회 결과와 다르게 시행한 정책에 대해 교육감에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교육정책 자문위원회가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이므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첨부자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구분	개최일	안건명(내용)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임시회	2020.12.16.(수)	-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제2회 정기회	2021.3.29.(월)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세칙(안)
임시 소위원회	2021.4.16.(금)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세칙(안) 주요 내용 협의
제3회 임시회 및 워크숍	2021.5.10.(월)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세칙 수정(안) - 2021. 주요업무 설명회
1차 실무위원회	2021.6.1.(화)	- 제4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2차 실무위원회	2021.6.22.(화)	- 충북교육청 현안사업 안내 및 질의답변 - 제4회 정기회 안건 협의
제4회 정기회	2021.7.6.(화)	- 2021. 일반고 동반성장 종합 지원 계획 - 학생 상담지원 및 자살위기관리시스템 운영 -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원격수업 지원 -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3차 실무위원회	2021.9.1.(수)	- 제5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제5회 정기회	2021.9.14.(화)	-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 현황 및 계획 -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기본계획 - 2021. 충북 교육회복지원사업 추진 계획

구분	개최일	안건명(내용)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선출
4차 실무위원회	2021.11.8.(월)	- 2021. 워크숍 운영 계획 협의
2021. 워크숍	2021.11.22.(월)	- 2022. 주요업무 설명 및 질의·답변
5차 실무위원회	2021.12.9.(목)	- 제6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제6회 정기회	2021.12.14.(화)	- 충북 기초학습안전망 운영 계획 - 충북형 공참여 교육복지 발전방안 - 모두가 꽃피우는 고교학점제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자치활동 -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제7회 임시회 및 고교학점제 포럼	2022.1.21.(금)	-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지원 현황 및 대책 - 고교학점제 포럼 운영
6차 실무위원회	2022.4.1.(금)	- 제8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제8회 정기회	2022.4.12.(화)	- 2022.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체험 운영 계획 - 2022. 학교 선거교육 및 참정권 교육 - 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 운영 방안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보호 - 교복의제별위원회 운영 결과
7차 실무위원회	2022.6.3.(금)	- 제9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제9회 정기회	2022.6.15.(수)	- 2022.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2022.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계획 - 2022. 독서·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 - 모듈러교실 증축 및 활용(안)
8차 실무위원회	2022.9.27.(화)	- 제10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제10회 정기회 (정원미달 미개의)	2022.10.25.(화)	- 유·초이음교육 활성화 지원 - 관계회복 조정 기구 운영 - 교육공동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진단평가 개선 방향 및 로드맵
9차 실무위원회	2022.11.8.(화)	- 제11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2023년도 주요업무 관련 워크숍 일정
2022. 워크숍	2022.11.28.(월)	- 2023년도 주요업무 설명
제11회 정기회	2022.12.6.(화)	- (보고)조직개편 방향 및 계획

구분	개최일	안건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진단평가 개선 방향 및 로드맵 - 학교지원센터 의제별위원회 운영 결과 - (보고)교복 의제별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관계회복 조정 기구 운영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 16. / 박병천 의원

○ 수정이유

- 교육 관련 단체라는 표현이 교직원 단체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 관련 단체’를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수정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제3조제3항제2호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8.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충북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충북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충청북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
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을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전을 각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와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제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연구 및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안하는 의제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 ①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민관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1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을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구성) ③ ----- ----- 2.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제3조(구성) ③ ----- ----- 2.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